'23년 상반기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일부 재연장

<'22.12.12.(월). 일학습기획부>

 ❖ 코로나19 대응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기한('22.12.31)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·반복적인 코로나19 유행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'23년 상반기에 필요한 조치 연장 추진

특별운영조치 경과 및 성과

가. 추진경과

- □ (코로나19 대응)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훈련운영조치 시행
- □ (훈련 실시 지원) 일학습병행 참여 및 훈련실시 규모 위축에 대응하여 훈련 활성화 및 훈련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
 - * ('20.2~'22.12) 특별조치 및 훈련운영조치 총 14회 시행

<현행 코로나19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(~'22.12.31.)>

구분	조치이전(~'20.2.25)	조치사항(~'22.12.31.)
► Off-JT ► 훈련과정개발·인정	집체식으로 진행	비대면 방식 허용
② ▶재직근로자 참여요건	재직기간 1년	재직기간 2년
3 ►OJT 훈련시간	1일 6H, 월 60H	▶대학생단계: 1일 8H, 월 100H ▶고교단계: 1일 7H, 월 100H * 재직자-비학위 과정은 미적용 → '22년 2학기까지 적용
4 ▶출석인정범위	기준 없음	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

나. 추진성과

- □ (훈련규모)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규참여 기업·근로자수 및 훈련실시 기업·근로자수 모두 85%이상 수준으로 회복
- '19년(코로나19 이전) 대비 신규참여 기업, 훈련실시 기업 및 훈련실시 학습근로자수 모두 증가하였으며, 신규참여 학습근로자 수는 86.2%임

<'19년 대비 훈련 현황(22.10월말 기준)>

(단위: 개소, 명, %, 자료: HRD-Net)

구분		'19년(코로나 이전)			'22년				'19년 대비			
		6월	7월	8월	9월	10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9단 메미
7101	신급함여	489	625	681	713	798	661	754	817	894	973	121.9%
기업	훈실시	6,890	6,955	7,200	7,282	5,253	6,013	6,085	6,198	6,316	6,378	121.4%
한습	신급하	9,319	9,919	12,524	13,027	13,524	8,189	8,913	10,115	11,150	11,656	86.2%
학습 근화	훈뷀	32,763	33,347	35,951	36,455	20,162	26,546	27,248	28,446	29,481	29,993	148.8%

* 신규참여 : 당해연도 신규참여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(월별 누적)

** 훈련실시 : 당해연도 훈련실시이력이 있는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(월별 누적)

○ '21년(코로나19 확산) 대비 신규참여 학습근로자 수는 103.7%이며, 신규참여기업, 훈련실시기업, 훈련실시 학습근로자수는 '21년과 비슷한 수준임

<'21년 대비 훈련 현황(22,10월말 기준)>

(단위: 개소, 명, %, 자료: HRD-Net)

구분		'21년(코로나 확산)			'22년				'21년 대비			
		6월	7월	8월	9월	10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21건 네미
710	신급함여	759	839	904	964	1,037	661	754	817	894	973	93.8%
기업	훈실시	6,082	6,105	6,206	6,350	6,431	6,013	6,085	6,198	6,316	6,378	99.2%
하습	신급성	7,720	8,158	9,230	10,506	11,244	8,189	8,913	10,115	11,150	11,656	103.7%
학습 근화	훈실시	27,225	27,595	28,698	29,974	30,716	26,546	27,248	28,446	29,481	29,993	97.6%

* 신규참여 : 당해연도 신규참여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(월별 누적)

** 훈련실시 : 당해연도 훈련실시이력이 있는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(월별 누적)

특별운영조치 일부항목 재연장

<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>

	구분	조치이전(~'20.2.25)	조치사항(~'22.12.31.)	'23년 상반기 조치(안)
1	▶Off-JT	집체식 훈련만 인정	비대면 방식 허용	별도 조치(완료)
1	▶ 훈련과정개발·인정	집체식 개발·인정	비네단 승규 역중	별도 조치(완료)
2	» 재직근로자 참여요건	재직기간(1년)	재직기간(2년)	기존 조치 종료
		OLTA OLI GLI I OLI GOLIN	▶대학생단계: 1일 8H, 월 100H	기존 조치 종료
3 • 0	▶OJT 훈련시간	OJT(1일 6H, 월 60H)	▶고교단계: 1일 7H, 월 100H * 재자바바위과정은미적용	*'22년 하반기 조치는 '22년 2학기까지 적용
4	▶출석인정범위	기준 없음	확자등출석전 7준 마련	기존 조치 연장

1. 비대면 사업장 외 훈련(Off-JT)

- (조치사항)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훈련운영 중에 훈련 전환 (대면→비대면)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상시 운영 기준 마련
 - * "훈련운영 중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대면 Off-JT 훈련 전환운영 방안 알림" -일학습기획부('22.11.16) 문서 참조
- (주요내용) 비대면 Off-JT 신고대상, 신고사유, 운영절차 등을 수립·안내

구분	조치이전(~'20.2.25)	조치사항(~'22.12.31.)	조치 방안
비대면 OFF-JT 허용	TIME - 31-1 ALT	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방식의 Off-JT 비대면 훈련 인정 *재학생 단계 및 재직자(학위 과정)은 교육부의 비대면 훈련 방법 및 기준 적용	(014)

2. 훈련과정 비대면 개발인정

○ (조치사항) 온라인 심사에 따른 과정개발 ~ 승인 단계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상시화 조치 완료(일학습과정개발센터)

구분	조치이전(~'20.2.25)	조치사항(~'22.12.31.)	조치 방안
훈련과정 비대면 개발·인정	집체식 개발·인정	PDMS를 통한 온라인 개발·인정	온라인 개발 (세부절차 등) 별도 조치 예정온라인 심사 상호로 조치완료

3. 재직근로자 참여요건 완화

○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및 훈련실시지원을 위해 조치한 재직기가 요거 완화 조치는 일상회복이 정상화됨에 따라 조치 종료

구분	조치이전(~'20.2.25)	조치사항(~'22.12.31.)	조치 방안
재직기간 참여요건	입직 1년 이내	입직 2년 이내	조치 종료

4. OJT 훈련시간

○ '22.7.1 이후 신규 실시과정부터 OJT 훈련시간 완화조치가 종료되었고 기훈련실시 중인 훈련과정에 한해 '22년도 2학기까지 특별운영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였기에 기존 조치 종료

구분	조치이전(~'20.2.25)	조치사항(~'22.12.31.)	조치 방안
ОЛ 시간	1일 6H, 월 60H	▶대학생단계 : 1일 8H, 월 100H ▶고교단계: 1일 7H, 월 100H * 재직자-비학위 과정은 미적용	조지 <mark>종료</mark> *'22년 2학기까지는 기존 연장조치 전용

* '22.3월 이후 실시 중인 도제학교 2년 과정에 대해서는 **'23.3월에 실시하는 2년차 훈련부터** 기존 연장조치 미적용

5. 출석인정범위 조정

- (필요성) 확진자 격리의무(7일) 등 **방역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조치 연장**
- (조치 방안) 향후 확진자 격리 기준 등 보건당국 지침 변경시 별도 기준 수립・시행

구분	조치(~'22.2.22.)	'22년 하반기 조치 (~'22.12.31.)	조치 방안
출석인정기준	▶(확진환자) 보건당국 격리 해제일까지 ▶(검사자) 검사일+1알총2일 ▶(백신접종자) 접종일+2일 (총3일)	애제 할까지(검세재위할 로부터 7일차 자정(24:00)) 해제 ▶(검사자)	기존 조치 <mark>연장</mark> (~'23.6.30)

^{*} 세부 출석인정 기준 <첨부1>

- ** 도제학교의 경우, 출석인정기준, 방과후 수업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연계되는 항목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적용
- ※ 학습근로자 전부 또는 기업현장교사 불참으로 훈련을 할 수 없는 경우, 훈련일정변경(시간표 변경) 등으로 처리(출석인정 안됨)

3 행정사항

- □ (코로나19 여건 반영) '23년 코로나19 상황, 정부 방역 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특별운영조치 수정·반영 검토
 -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등 특별운영조치와 일부 연계되는 타 지침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운영조치에 필요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 검토

붙임 1

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중 출석인정범위

□ 내용

○ (출석인정기간)

	구분	~'22.12.31	'23.1.1~6.30
	확진자	보건당국 격리 해제일*까지 출석인정 (SMS 문자내용 등 증빙 필요) *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(24:00) 해제	좌동
대	의사환자*		
상 자	조사대상 유증상자	출석인정기준에서 제외	좌동
^[자가격리자①		
	자가격리자②	해당일까지(최대 7일) 출석인정 *학습기업의 관련 공문 필요	좌동

<대상자 구분>

▶ 의사환자 :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
▶ 자가격리자① : 해외입국자이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

▶ 자가격리자② : 학습기업 내부기준에 따라 학습근로자 일부가 자가격리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자

○ (수시검사 출석인정) '22년 하반기 특별운영조치 현행유지

구분	대상	출석인정 일수
	PCR 우선 검사 대상	검사일+1일 (총2일)
내용	PCR 우선 검사 미대상 (신속항원검사 대상)	검사일*

* 증빙서류 : (신속항원검사) 신속항원검사 결과서, (자가검사키트) 자가검사키트 구매 영수증 등

[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]

- (PCR 우선 검사 대상*) 전국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 진행
- * ①만60세 이상 고령자, ②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,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, ④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, ⑤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
- (PCR 우선 검사 미대상) 전국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(동네 의원)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검사 진행 → 결과가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진행

□ 적용기간 : ~	<i>'</i> 23. <i>6</i>	6. 30.	(특별운영조치	종료	기한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	----	-----

□ 행정사항 : HRD-Net 출석인정요청 시 사유를 '코로나19' 관련 항목으로 요청